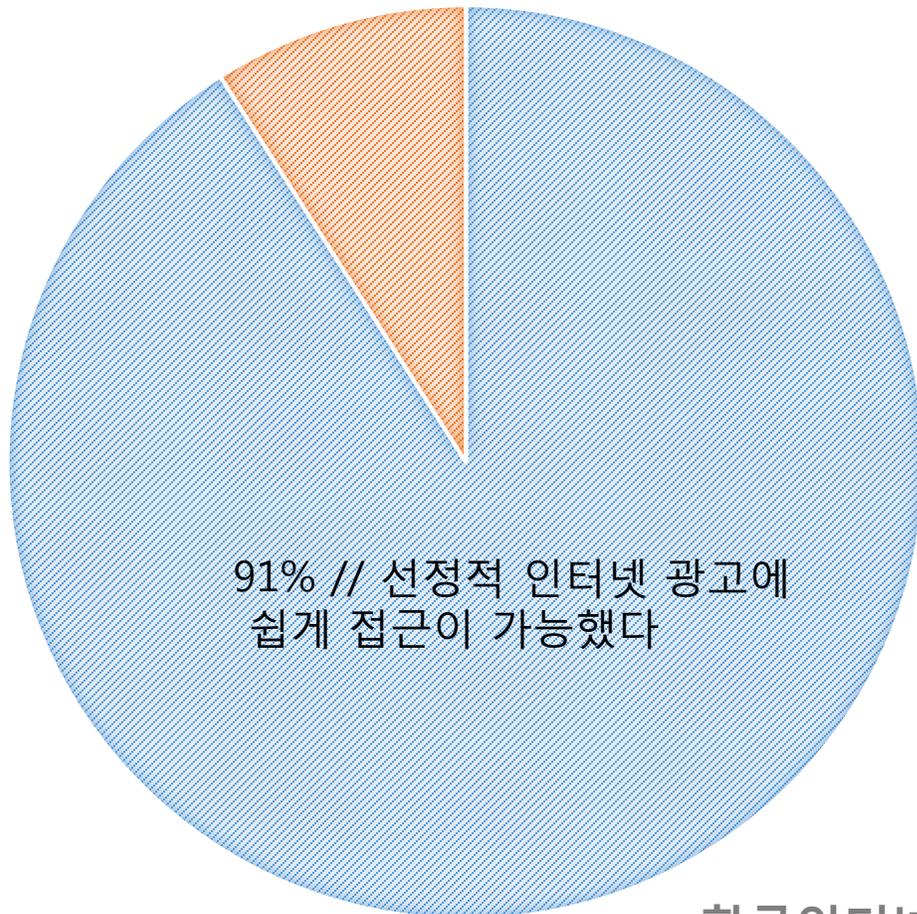


인터넷 광고 규제를
위한 정보통신망
이용촉진 및 정보보호
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

문제점 1

1

인터넷에 쉽게 노출되는 음란물 선정적 인터넷광고 접근율



91% // 선정적 인터넷 광고에
쉽게 접근이 가능했다



선정적 광고물 // 페이스북

문제점 2

2

다소 불쾌한 내용의 광고



신설



제44조의11 (인터넷 광고의 제한)

① 어떤 사이트의 이용 연령층 과반이 만 19세 이하일 때와

어린이, 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는

1.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일체 금지한다.

② 어떤 사이트의 이용 연령층 과반이 만 19세 이상일 때
1.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각 목의 해당하는 시간에 광고를 제한한다.

2. 담배, 주류 및 중독성 물질

가. 7:00 - 22:00

3. 대부업

가. 평일 : 7:00 - 9:00, 13:00 - 22:00

나. 토요일 및 공휴일 : 7:00 - 22:00

4.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로 심의된 것

가. 7:00 - 22:00

현행

제74조(벌칙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2.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
3.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4.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
5. 삭제 <2014.5.28.>
6.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7.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·양수 또는 합병·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개정안

제74조(벌칙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2. <삭제>
3.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4.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
5. 삭제 <2014.5.28.>
6.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7.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·양수 또는 합병·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현행

제72조(벌칙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유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·중개·권유·광고한 자가. 재화등의 판매·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

나.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·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·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

5.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

제44조의7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

1.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

개정안

제72조(벌칙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유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·중개·권유·광고한 자

가. 재화등의 판매·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

나.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·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·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

5.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

6.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

4

개선 방향

건전한 인터넷 사회

